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양경숙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20670

발의연월일: 2023. 3. 15.

발 의 자:양경숙·김병주·김한규

박영순 • 이개호 • 윤후덕

김남국 • 이병훈 • 강병원

김홍걸・설 훈・양정숙

의원(12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 「조세특례제한법」 및 하위 법령에 따르면 국가전략기술은 반도체, 이차전지, 백신 등이고 해당 기술의 시설투자에 대해 대·중 견기업 8%, 중소기업 16%의 세액공제를 적용하고 있음.

그런데 2022년 12월 23일 현행 개정안이 본회의를 통과한 지 얼마안 되어, 기획재정부는 1월 19일 반도체 등 국가전략기술 시설투자에 대한 세액공제율을 대·중견기업은 15%, 중소기업은 25%로 상향하는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발의하고, 최근 시행령 개정을 통해 국가전략기술 투자세액공제 대상에 능동형 유기발광 다이오드(AMOLED)와마이크로 LED 등 디스플레이 분야 기술을 대거 포함시켰음

그러나 정부가 발의한 개정안에 따른 세수감소 효과가 2년간 4조 2,6 00억원에 달하며, 이러한 세제혜택이 반도체 분야의 특정 대기업에게 과도하게 집중될 우려가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음.

또한 국가전략기술 시설투자는 높은 세액공제를 적용받고 있음에도 국가전략기술 지정이 시행령에 포괄위임 되어 있어 어느 기술이 지정 되는지 예측할 수 없는 등 조세법률주의에 배치되는 측면이 있음.

아울러 반도체 이외에도 수소 등 탄소중립을 위한 녹색산업, 전기차등 미래형 자동차, 인공지능 등 지능정보산업도 반도체 등에 못지않게 미래산업의 혁신을 견인할 중요한 산업이라고 할 수 있음.

이에 국가전략기술 분야를 법률로 상향함으로써 조세법률주의에 부합하도록 법을 정비하고 수소 등 탄소중립을 위한 녹색산업, 전기차등 미래형 자동차, 인공지능 등 지능정보산업을 국가전략기술에 포함하는 등 사업 품목을 확대하는 한편, 세액공제율을 대·중견기업 8%에서 10%, 중소기업 16%에서 25%로 일괄 상향하고 일몰기한을 2025년 말로 연장하고자 함(안 제24조제1항제2호가목).

법률 제 호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조세특례제한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4조제1항제2호가목2)를 다음과 같이 한다.

- 2) 다음의 어느 하나의 분야에 해당하는 국가전략기술의 사업화를 위한 시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이하 이 조에서 "국가전략기술사업화시설"이라 한다)에 2025년 12월 31일까지투자하는 경우: 100분의 10(중소기업은 100분의 25)에 상당하는 금액
 - 가) 반도체
 - 나) 이차전지
 - 다) 백신 등 바이오 헬스산업
 - 라) 디스플레이
 - 마) 수소 등 탄소중립을 위한 녹색산업
 - 바) 전기차 등 미래형 자동차
 - 사) 인공지능 등 지능정보산업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통합투자세액공제에 관한 적용례) 제24조제1항제2호가목2)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투자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4조(통합투자세액공제) ① 대	제24조(통합투자세액공제) ①
통령령으로 정하는 내국인이 제	
1호가목 또는 나목에 해당하는	
자산에 투자(중고품 및 대통령	
령으로 정하는 리스에 의한 투	
자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하는 경우에는 제2호 각	
목에 따른 기본공제 금액과 추	
가공제 금액을 합한 금액을 해	
당 투자가 이루어지는 과세연도	
의 소득세(사업소득에 대한 소	
득세만 해당한다) 또는 법인세	
에서 공제한다.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공제금액	2
가. 기본공제 금액: 해당 과세	7}
연도에 투자한 금액의 100	
분의 1(중견기업은 100분	
의 3, 중소기업은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 다만,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	
하는 경우에는 다음의 구	
분에 따른 금액으로 한다.	<u>.</u>

- 1) (생략)
- 2) 국가전략기술의 사업화를 위한 시설로서 대통령 경으로 정하는 시설(이하이 조에서 "국가전략기술 사업화시설"이라 한다)에 2024년 12월 31일까지 투자하는 경우: 100분의 8(중소기업은 100분의 16)에 상당하는 금액
- 1) (현행과 같음)
- 2) 다음의 어느 하나의 분 야에 해당하는 국가전략기술의 사업화를 위한 시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이하 이 조에서 "국가전략사업화시설"이라 한다)에 2025년 12월 31일까지 투자하는 경우: 100분의 10(중소기업은 100분의 25)에 상당하는 금액
 - <u>가) 반</u>도체
 - 나) 이차전지
 - <u>다) 백신 등 바이오 · 헬</u> 스 산업
 - 라) 디스플레이
 - <u>마) 수소 등 탄소중립을</u> 위한 녹색산업
 - <u>바) 전기차 등 미래 자동</u> 차
 - 사) 인공지능 등 지능정 보산업

나. (현행과 같음)

② ~ ⑤ (현행과 같음)

나. (생 략) ② ~ ⑤ (생 략)